

#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정

제정 1997.3.8.  
개정 2000.8.19.  
개정 2001.8.18.  
개정 2005.3.1.  
개정 2015.1.1.  
개정 2023.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제22조에 의거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관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정관 제11조제2항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선출된 5인의 위원 중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 시행연도 5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⑥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⑦ 선관위 회의는 위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선관위의 임무)** ①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수석부회장 선거일정 공고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와 등록 서류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감사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에 관한 사항
4.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방법과 개표에 관한 사항

6. 당선자의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선관위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피선거권과 선거권)** ① 수석부회장 선거 연도를 기준으로 7년 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회원이 된 회원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학회 재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은 정회원기간에 관계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 선거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회원이 된 회원은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선거방법)** ① 수석부회장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되,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투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투표 방식 중 선관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거하여 정한 선거방법과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투표에 대한 개표는 총회에서 선관위가 한다.  
⑤ 감사 선거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 후보 2인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거수에 의한 투표로 하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의결한다.

**제6조(입후보자 등록)** ①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추천서
3. 소견서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는 투표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공고 방법에 관하여서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8조(결선투표)** ① 제5조에 의거하여 선관위가 정한 투표 방식 및 일정에 따라 투표를 시행한 후 개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총회 당일 결선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최고득표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40%에 미달인 경우

2.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

② 결선투표는 최고득표후보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고득표후보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③ 결선투표에서 도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④ 결선투표는 총회에 대면으로 참석한 선거권자 1인 1표로 하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투표 방식 중 선관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수석부회장 및 감사 보선)** 수석부회장 및 감사 유고시에는 다음에 따라 보원한다.

1.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일 경우에는 이미 구성된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여 정기총회에서 현 수석부회장과 차기 수석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중 6개월 이상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선관위의 해산)** 선관위는 총회에서 수석부회장 및 감사 당선자의 공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11조(기타 사항)**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 부 칙

- ① 제정된 규정은 1997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② 개정된 규정은 2000년 8월 19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개정된 규정은 2001년 8월 18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개정된 규정은 2005년 3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⑤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⑥ 개정된 규정은 2023년 9월 16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2023.09.16)

**제1조(시행일)** 이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관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른 선관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나 선관  
위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나 선관위에 대한  
행위로 본다.